

수원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1나183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1나1832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4042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피플

담당변호사 박성배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은

변론 종결2023. 12. 21.

판결 선고2024. 3. 28.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40428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10. 2. 접수 제370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10. 2. 접수 제370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열 번째 행 중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을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세 번째 행 중 "계약을"을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표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행 중 "갑 제1, 4, 8호증"을 "갑 제1, 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2행 중 "포함)의"를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선행판결에 의한 채무(선행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는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앞으로 그 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C은 2019. 10. 2. 무렵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 주식 180,000주 및 광주시 AF 임야 46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성남시 분당구 AG, A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의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지 않았다.
- 2) 외부투자심사보고서에 의한 위 주식의 평가액은 2021년 기준 약 8,000,000,000원에 이르며 적어도 위 주식의 액면가에 따른 납입금 90,000,000원의 가치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7억 원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전세 시세는 약 5억 원에서 6억 원이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2019. 10. 1.) C은 무자력이 아니었다.
- 3) C은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더 이상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이하 '채권자취소권 소멸의 항변'이라 한다).
- 4) 피고는 E 내지 C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고는 C의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을 알 수 없었던 점, E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이하 '수익자 선의의 항변'이라 한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6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9 내지 11,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C의 보유재산 현황¹⁾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AE 주식 180,000주	90,000,000원	을 제9, 10, 16호증,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순천세무서)
2	주식회사 AQ 주식 8,000주	4,000,000원 ²⁾ 이 법원의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C은	을 제18호증의 1, 2, 과세정보회신서(역삼세무서)

1	주식회사 AE 주식 180,000주	90,000,000원	을 제9, 10, 16호증,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순천세무서)
		2019. 1. 1.부터 2019. 12. 31. 사이에 주식회사 AQ의 주식 8,000주를 보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그 구체적인 양도 시기는 드러나지 않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이 위 주식회사 AQ 주식 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C이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이 사건 토지	140,924,283원3) 산출근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84,130,000원 - 주식회사 AO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94,000,000원 ×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84,130,000원 ÷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84,13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의 시가 696,000,000원)]이 사건 토지의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토지가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과 함께 채무자 AV의 주식회사 AO에 대한 채무의 물상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위 토지 및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주식회사 AO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위 토지 및 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극재산 액수로 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21. 5. 5.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2020. 6. 2.을 기준으로 감정된 것이나, 사해행위 당시인 2019. 10. 1.을 기준으로 하여도 C의 무자력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재산 금액으로 인정한다.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의 7, 을 제11호증, 사실조회회신(법원행정처)
4	이 사건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	345,205,718원4) 산출근거: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의 시가 696,000,000원 - 주식회사 AO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94,00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의 시가 696,000,000원 ÷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84,13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의 시가 696,000,000원)]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의 적극재산 가액은,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채무자 AV의 주식회사 AO에 대한 채무의 물상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위 토지 및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주식회사 AO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위 토지 및 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	909,000,000원5) 산출근거: 별지 목록 순번 3부동산의 시가		

1	주식회사 AE 주식 180,000주	90,000,000원	을 제9, 10, 16호증,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순천세무서)
부동산	46,00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4 부동산의 시가 57,00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5 부동산의 시가 57,00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6 부동산의 시가 226,00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7 부동산의 시가 523,000,000원위 시가는 2020. 6. 2.을 기준으로 감정된 것이나, 사해행위 당시인 2019. 10. 1.을 기준으로 하여도 C의 무자력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재산 금액으로 인정한다.		
5	예금채권	4,793,764원6) 산출근거: 2,674,347원[2022. 4. 11.자 금융거래정보회신 (AI)] + 14,131원[2022. 4. 13.자 사실조회회신 (F)] + 904원[2022. 4. 14.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 (AK)] + 1,354,421원 + 3,485원 [2022. 4. 14.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 (AJ)] + 3,112원[2022. 4. 14.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 (IBK기업은행)] + 732,396원 [2022. 4. 14.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 (AR)] + 17원[2022. 4. 15.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AM)] + 1,823원 + 9,128원[2022. 4. 21.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AN)]	금융거래정보회신(AI), 사실조회회신(F), 금융거래정보회신서(AK, AJ, IBK기업은행, AR, AM, AN)
적극재산 합계	1,493,923,765원		
소극재산			
순번	재산의 종류	금액	인정근거
1	이 사건 판결금채권	1,186,475,409원7) 산출근거: 원금 1,000,000,000원 + 2018. 7. 5.부터 2019. 10. 1.까지 이자 186,475,409원	갑 제4호증
2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부 채무(AS조합)8) 위 근저당권은 2021. 7. 5. AW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을 제11호증 4쪽).	140,000,000원
가압류 청구금액 (주식회사 AT)	544,551,178원9) 원금 320,000,000원 + 2015. 10. 2.부터 2015. 11. 30.까지 이자 3,619,672원 + 2015. 12. 1.부터 2019. 10. 1.까지 자연손해금 224,551,178원		

1	주식회사 AE 주식 180,000주	90,000,000원	을 제9, 10, 16호증,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순천세무서)
가압류 청구금액 (H)	28,867,600원		
3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무 (주식회사 AP)	533,000,000원
가압류 청구금액 (주식회사 AU)	847,438,651원 ¹⁰⁾ 위 금액은 2019. 10. 24.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나, 사해행위 당시인 2019. 10. 1.을 기준으로 하여도 C의 무자력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재산 금액으로 인정한다.		
4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무 (G조합)	325,000,000원
가압류 청구금액 (주식회사 AU)	(847,438,651원) ¹¹⁾ 소극재산 순번 3 '재산의 종류' 란의 '가압류 청구금액(주식회사 AU)'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은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극재산 합계	3,605,332,838원		

한편 피고는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적극재산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2022. 4. 22. 자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09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94,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AO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동저당물인 이 사건 토지와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적극재산 가액이 345,205,718원인 사실, 또한 당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33,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AP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이 위 각 부동산의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각 부동산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909,000,000원인 사실, 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하는 G조합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합계 909,000,000원)는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325,000,000원)을 초과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C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는 위 각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고, 그렇다면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 소멸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당심 변론종결시(2023. 12. 21.)를 기준으로 위 적극재산을 제외하고도 AE 주식 300,000주, 주식회사 AX 주식 10,000주, 주식회사 AQ 주식

8,000주, 주식회사 AY 주식 2,000주(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서 해소되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장, 시흥세무서장, 통영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2022. 11. 9. AE 주식 180,000주, AQ 주식 8,000주를 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C이 당심 변론종결시 위 각 주식 외에도 AE 주식 300,000주, AX 주식 10,000주, AY 주식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C이 보유한 위 AE 주식 180,000주 및 AQ 주식 8,000주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주식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인 시가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E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제시하였다는 2019. 3. 28. 자 AE의 외부투자심사보고서(을 제9호증) 중 '재무요약' 란의 기재 및 이 법원의 A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E는 2019년 매출액 95,866,100원, 당기순손실 1,670,921,232원, 2020년 매출액 8,181,818원, 당기순손실 788,901,134원, 2021년 매출액 0원, 당기순손실 228,698,31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AE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위 외부투자심사보고서의 기재 중 재무제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보 외에 AE의 성장 가치 등에 관한 기재나 AE가 2022. 8. 현재 200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취지의 AE의 2022. 8. 29. 자 사실조회회신 내용 등은 앞서 본 AE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손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AE나 AQ 주식의 가액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¹²등을 종합하면, 을 제8, 9,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A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C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AE 및 AQ 주식의 가액을 더한 C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넘어 무자력 상태에서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익자 선의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 10행 중 "E은"을 "E은 2019. 9. 1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중 "피고의 주장은"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소영

판사나청

판사김나영

별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C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자 그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소극재산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C 소유 부동산의 시가는 적극재산으로 각 산정하였다. C 소유의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AO 명의의 근저당권, 주식회사 AP 명의의 근저당권,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 상당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다툼 없는 사실로 본다.

2) 이 법원의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C은 2019. 1. 1.부터 2019. 12. 31. 사이에 주식회사 AQ의 주식 8,000주를 보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그 구체적인 양도 시기는 드러나지 않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이 위 주식회사 AQ 주식 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C이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산출근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84,130,000원 - 주식회사 AO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94,000,000원 $\times$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84,130,000원 $\div$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84,13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의 시가 696,0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토지가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과 함께 채무자 AV의 주식회사 AO에 대한 채무의 물상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위 토지 및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주식회사 AO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위 토지 및 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극재산 액수로 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21. 5. 5.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2020. 6. 2.을 기준으로 감정된 것이나, 사해행위 당시인 2019. 10. 1.을 기준으로 하여도 C의 무자력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재산 금액으로 인정한다. 이하 같다.

4) 산출근거: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의 시가 696,000,000원 - 주식회사 AO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94,000,000원 $\times$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의 시가 696,000,000원 $\div$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84,13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의 시가 696,000,000원)]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의 적극재산 가액은,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채무자 AV의 주식회사 AO에 대한 채무의 물상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위 토지 및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주식회사 AO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위 토지 및 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5) 산출근거: 별지 목록 순번 3부동산의 시가 46,00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4 부동산의 시가 57,00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5 부동산의 시가 57,00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6 부동산의 시가 226,000,000원 + 별지 목록 순번 7 부동산의 시가 523,000,000원

위 시가는 2020. 6. 2.을 기준으로 감정된 것이나, 사해행위 당시인 2019. 10. 1.을 기준으로 하여도 C의 무자력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재산 금액으로 인정한다.

6) 산출근거: 2,674,347원[2022. 4. 11.자 금융거래정보회신 (AI)] + 14,131원[2022. 4. 13.자 사실조회회신 (F)] + 904원[2022. 4. 14.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 (AK)] + 1,354,421원 + 3,485원 [2022. 4. 14.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 (AJ)] + 3,112원[2022. 4. 14.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 (IBK기업은행)] + 732,396원 [2022. 4. 14.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 (AR)] + 17원[2022. 4. 15.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AM)]

+ 1,823원 + 9,128원[2022. 4. 21.자 금융거래정보회신서(AN)]

7) 산출근거: 원금 1,000,000,000원 + 2018. 7. 5.부터 2019. 10. 1.까지 이자 186,475,409원

8) 위 근저당권은 2021. 7. 5. AW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을 제11호증 4쪽).

9) 원금 320,000,000원 + 2015. 10. 2.부터 2015. 11. 30.까지 이자 3,619,672원 + 2015. 12. 1.부터 2019. 10. 1.까지 지연손해금 224,551,178원

10) 위 금액은 2019. 10. 24.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나, 사해행위 당시인 2019. 10. 1.을 기준으로 하여도 C의 무자력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재산 금액으로 인정한다.

11) 소극재산 순번 3 '재산의 종류' 란의 '가압류 청구금액(주식회사 AU)'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은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피고는 2023. 3. 10. 이 법원에서 위 각 주식 가액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채택되었으나, 2023. 9. 14. 이를 철회하였다.